

### 09 우리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처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?

- 1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·게시하십시오.
  - 2 우리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,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,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십시오.
    - \* 관리감독자(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), 안전보건관리담당자(제19조) 등 확인
  - 3 사업장 순회점검, 안전보건 제안제도,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십시오.
  - 4 비상대응체계 수립·훈련,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십시오.
  - 5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·위험요인을 확인·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, 이에 따라 확인·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·조치하는 체계를 잘 갖추십시오.
    -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.
- 🏠 중소 영세기업을 위한 다양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를 통해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사·사례·절차 등을 활용하여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.
- \*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(www.koshasafety.co.kr) → '중대재해처벌법 자료' 에서 「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매뉴얼」, 「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」 등 활용

### 10 제조업, 건설업 이외에 식당, 호텔 등 다른 업종에서 참고 할만한 자료가 있나요?

- 🏠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🏠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,
- 음식점·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, 호텔 등 숙박업 등을 포함하여 주요 20개의 업종에 대한 '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' 및 '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'를 마련·배포하였습니다.
  - \* 「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」(www.koshasafety.co.kr) → '중대재해처벌법 자료'에서 확인
- 🏠 가이드북과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동종업종의 재해 발생 유형,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우리 사업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.
- 🏠 또한, 관련 협·단체와 함께 영세 중소기업체, 개인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.

### 11 영업과 생산, 안전관리까지 도맡아야 하는 영세업체는 법 적용 준비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데,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정부 지원이 있나요?

- 🏠 50명 미만 기업은 '산업안전 대진단'에 참여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·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.
- \*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→ '산업안전 대진단' 팝업창(1.29부터 참여 가능)
- 🏠 누구나 쉽게 온·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우리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,
-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·교육·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적극 신청하거나,
  - 가이드·안내서 등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.
- 🏠 아울러, 전국 30개 권역의 '산업안전 대진단 상담·지원센터'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·신청하거나(대표번호 1544-1133),
-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·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12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·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(개인사업자)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나요?

- 🏠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선임한 500명 이상 사업장, 시공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
- 상시 근로자 수가 5~50명 미만 기업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.

### 13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·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(개인사업자)도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두어야 하나요?

- 🏠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안전전문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\*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(안전관리자), 제18조(보건관리자), 제19조(안전보건관리담당자), 제22조(산업보건의)
- 따라서, 5~50명 미만 중 일부 규모·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전문인력을 두면 됩니다.
- (안전보건관리담당자) 20~50명 미만 중 제조업, 임업, 하수·환경·폐기업 등 5개 업종에 한해 1명 선임
- ➔ (자격)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·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,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이수자 선임 가능
  - ➔ (역할) 안전보건교육 실시, 위험성평가, 작업환경 측정·개선,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- 🏠 다만,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, 안전을 관리·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### 14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·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도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나요?

- 🏠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- 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·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,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🏠 다만,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실시(절차마련, 절차에 따른 실시 및 실시 결과 보고)한 경우에는 유해·위험요인의 파악·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
### 15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 전화가 계속 오는데,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있는 건가요?

- 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,
- 그 외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
- 🏠 따라서,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되며,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없습니다.
- 🏠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교육·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은 안전보건공단,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(20개 업종)

- ▲금속주조업, ▲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, ▲섬유제품 염색,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, ▲육상 화물 취급업, ▲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, ▲플라스틱 제품 제조업, ▲자동차 부품 부품 제조업, ▲식료품 제조업, ▲펠프, 종이 및 판지 제조업, ▲인쇄업, ▲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, ▲강선 건조업, ▲섬유제품 제조업, ▲벌목업, ▲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, ▲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, ▲목재 가구 제조업, ▲전기장비 제조업, ▲도금업, ▲숙박 및 음식점업

고용노동부  
상담센터

(국번없이) 1350



www.moel.go.kr

#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

## Q&A



#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



## 안전보건관리체계란?

### ☑ 안전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

- ▶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·이행하고,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.

## 무엇을 해야 하는가?

### ☑ 우리 회사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

- ▶ 우리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.
- ▶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·기구,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·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합니다.

## 💡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및 실행방안

### 경영자 리더십

- ☑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·목표 설정
- ☑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·게시

### 안전보건 인력·예산 배정

- ☑ 안전·보건 조직·담당자를 지정하고, 권한과 책임을 부여
- ☑ 안전·보건 예산 편성, 용도에 맞게 집행

### 유해·위험요인 파악·개선

- ☑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·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실시
- ☑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(TBM)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유해·위험요인 파악·개선에 대한 근로자 참여·공유
- ☑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절차 마련(안전보건 제안제도, 아차사고 신고, 안전 소통채널 운영 등)
- ☑ 도급·용역·위탁 시 산재예방 역량을 갖춘 수급인 선정

###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·평가

- ☑ 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·점검
- ☑ 산재사고, 아차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
- 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반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·평가

##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&A

### 01 중대재해처벌법이 '24.1.27.부터 왜 갑자기 확대 적용 되었나요?

- ☑ 중대재해처벌법은 '21.1.26.에 제정되어 '22.1.27.에 50인(역)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, 50인(역)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.
  - 정부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50인 미만 기업 83.7만개소 중 절반 수준인 45만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건설·교육·기술지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.
- ☑ 다만, 지난 해('23.9.7.) 50인(역)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·논의되었으나,
  -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, 당초 법안대로 '24.1.27.부터 50인(역)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.

### 02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,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 받나요?

- ☑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“안전·보건관리체계”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,
  - 안전·보건 관리체계 구축·이행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.
- ☑ 이때 중대산업재해란,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
  -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  -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
  -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.

### 0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?

- ☑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.
- ☑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.
- ☑ 또한,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,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, 고의 및 예견 가능성, 인과관계 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.

#### [예] 고의·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

- ▶ 지하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 사고
- ▶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

##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&A

### 04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이나 대기업만 대상으로 알았는데 식당·카페·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해당 되는 건가요?

- ☑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, 개인사업주도 적용이 됩니다.
- ☑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, 음식점업,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.

### 05 음식점·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,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?

- ☑ 제조·건설업 등에 비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, 실제 50명 미만 소규모 음식점, 주유소 등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.
- ☑ [예] 다짐육 배합기 또는 자동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이거나, 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 발생
- ☑ 따라서, 음식점·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고,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,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### 06 우리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,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?

- ☑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.
- ☑ 따라서,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- ☑ 이 때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.

#### [예]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매장이 있고, 각 직영매장에 상시 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

- ▶ 상시 근로자 수 = 4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(16명)
- ▶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 (법 제3조)

##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&A

### 07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요?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요?

- ☑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.
- ☑ 이때, 근로자는 기간제,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.
- ☑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,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.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
- \* 동거 친족이 근로하는 경우, 친족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친족 근로자도 포함해 계산
- ☑ 참고)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여부 또는 종업원 수 산정기준과는 별개임

### 08 2천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가요?

- ☑ '24.1.27 이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50억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.
- ☑ 그러나, '24.1.27.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.
-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.

####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

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▲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▲1개월 간 사용한 ▲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▲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(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)

$$\text{상시 근로자 수} = \frac{\text{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}}{\text{산정기간 중 가동일수}}$$

- ☑ [예] 근로자 연인원 산정 시 업무가 바쁠 때 가끔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,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1명으로 포함

